

정토록 하여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범위를 정당의 당헌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2조)

2) 현행 및 법률 개정안

- 현행 : 공무원·교사 등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음

<표 I-4-15>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자

구분	내용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다만 다음의 사람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국회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 - 국·공립대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 ◦ 사립학교의 교원, 다만 다음의 사람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대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익법무관, 국제협력의사,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당원의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선거권이 제한되어 당원 자격도 제한됨

- 법률 개정안

<정당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대한민국 국민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의 당헌으로 정하는 연령 해당자는 -----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서 삭제>

<삭 제>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삭 제>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삭 제>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삭 제>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 I-4-16> 정당법 개정안 비교표

구 分	현 행	제18대 국회		제19대 국회		제20대 국회	
		권영길·김선동/백원우 의원소개청원 의원안	이상규 의원안	정진후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제안 안	
공무원당원 가입	금지	허용	허용	허용			
정당기입연 령	국회의원선 거권이 있는 자				15세 이상	정당의 당헌으로 정함	
별칙조항	있음				삭제		

2. 정치자금법 개정

가. 현황

-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정치자금법 제3조),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정치자금법 제1조)
- 후원회의 회원은 “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8조)
- 정치자금의 기부를 할 수 없는 자는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및 단체(「정치자금법」 제31조제1항)이고, 정당의 당원이 수 없는 자는 공무원(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

정보조료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행정보조료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정보조료원, 국·공립대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 제외). 사립학교의 교원(사립대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 제외)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공익법무관, 국제협력의사,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이고 (정당법 제22조 단서조항) 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선거권이 제한되어 당원 자격도 제한되고 있음.

나. 문제점

- 공무원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후원금을 통해 정치적 지지를 표출하는 것은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임. 그러나 공무원은 후원회 가입이 제한되어 있어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어 정치후원금을 통한 정치적 지지를 표출할 방법이 없음.
-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후원회 회원이 아닌 자도 후원금 기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법규에서 후원금 기부가 금지되어 있음.
- 이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중앙당 후원회의 허용, 지정기탁금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중앙당 후원회는 1980. 12. 31일 도입되었다가 정경유착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2006. 3. 13. 폐지된 제도로 정당 정치의 활성화 및 당에 대한 후원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활성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이익단체의 청탁 소지라는 부정적 측면을 비교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중앙당 후원회 허용은 정당에 대한 지정 기탁금 제도와 유사한 효과가 있으므로 함께 논의 필요가 있음
 - 지정기탁금제 신설은 1965. 2. 9. 도입되었다가 지정기탁금에 따른 기탁금의 특정 정당 편중현상방지를 위하여 폐지된 제도로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 편의 확보, 기부자의 정치적 선호 반영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특정 정당에의 정치자금 편중, 기탁 압박 등의 부정적 측면 또한 검토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정당에 대한 지정 기탁금 제도는 중앙당 후원회 허용과 유사한 효과가 있으므로 함께 논의 필요

-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대하여는 현행법에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불법정치자금을 차단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근절한다는 취지이나, 한편으로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개인의 소액기부금에 한정함에 따라 정치자금의 모금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기업도 정치적 의사표현의 하나로서 정치 자금 기부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다. 전교조 교사 및 공무원의 민주노동당 가입과 후원금 수사 기소

- 2009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전개하면서 민주노동당에 당원 또는 후원당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5천원~2만원 내외의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에 대해 수사범위를 넓히고,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전교조 소속 교사와 공무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한 사건이 있음.
- 수사 경과 및 결과는 2010. 1.25. 경찰, 전교조·전공노 간부 69명에 출석 통보함(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혐의). 박용만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 공무원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중 전교조 교사, 공무원노조 공무원들의 혐의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으며, 계좌추적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힘.⁶²⁾
- 2010. 2. 4. 영등포 경찰서,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서버가 보관돼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T 인터넷 데이터 센터 압수수색.
-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기소(정치자금법 총기소자 1,587명 : 공무원노조 269, 전교조 1,318명)
- 공무원노조 기소자 : 269명(중앙지법35, 수원지법42, 의정부지법8, 인천지법17, 춘천지법59, 청주지법8, 대구지법15, 울산지법4, 창원지법43, 부산지법7, 광주지법9, 전주지법2, 대전지법 20명)
 - 본부별 기소자 : 서울33, 경기47, 인천18, 강원58, 충남20, 충북8, 대경13, 울산4, 경남43, 부산7, 전남3, 광주6, 전북2, 법원4, 교육청2, 대학1명
- 2010. 5. 6 검찰, 전·현직 교사(183명)와 공무원(90명) 273명 불구속 기소 (민주노동당 가입과 후원금 납부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6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내부자료

혐의).

- 관련죄목: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정치자금법 총기소자 1,587명 : 무원노조 269, 전교조 1,318명)
- 제1차 정치자금법 기소 : 273명(공무원노조 90명, 전교조 183명), 서울중앙지법 일괄기소
- 2011. 1. 26 제1심 선고(중앙지법 22부 44명, 중앙지법 23부 46명 등 90명) : 벌금50만원 10명, 벌금30만원 78명, 무죄2명)
- 2011. 7~8. 검찰, 추가 수사 후 교사(1,352명)과 공무원(295명) 1,647명 불구속 기소, 40명 기소유예, 1명 기소중지, 179명 입건유예, 134명 무혐의 처분
- 재판 경과 및 결과(일부 재판 결과만 소개함)⁶³⁾
 - <1차 수사 기소자>
 - 2011. 1. 26 1차 수사 불구속 기소자 267명에 대한 1심 선고
 - 후원금 납부로 인한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벌금 30만원~50만원(260명), 무죄(7명)
 - 정당가입에 따른 정당법 위반 혐의, 시효완성에 따른 면소(244명) 또는 증거부족 무죄(23명)
 -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483. 형사합의23부 홍승면(재판장), 조지환, 황은규 판사,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484, 형사합의22부 김우진 부장판사 등]
 - <추가 수사 기소자>
 - 2011.11.28. 경기지역 교사 및 공무원 61명에 대한 1심, 벌금 20만원~30만원(일부 선고유예,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당법 위반 등은 면소.[수원지법 형사11부 이동훈 부장판사]
 - 2011.11.29. 경기지역 교사 및 공무원 64명에 대한 1심, 벌금 20만원~30만원(일부 선고유예,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당법 위반 등은 면소. [수원지법 형사12부 위현석 부장판사]
 - 2011.12.29. 경기지역 교사 및 공무원 67명에 대한 1심, 벌금 20만원~30만원(일부 선고유예, 정치자금법 위반 등). [수원지법 형사11부 이동훈 부장판사]
 - 2012. 1.30. 서울지역 교사 및 공무원 225명에 대한 1심, 224명 벌금 30

63)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CaseDB/1082175>. 2017. 3. 10 검색

- 만원~50만원(일부 선고유예, 정치자금법 위반 등, 1명 무죄), 정당법 위반은 면소.[서울중앙지법 형사21,22,23부]
- 2012. 2.14. 대전충남지역 교사 및 공무원 48명에 대한 1심, 벌금 20만원~50만원(일부 선고유예,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당법 위반 등은 면소.[대전지법 형사11부 김동아 부장판사]
 - 2012. 2.16. 부산지역 교사 및 공무원 25명에 대한 1심, 벌금 20만원~30만원(일부 선고유예,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당법 위반 등은 면소.[부산지법 형사11부]
 - 2012. 2.17. 강원지역 교사 및 공무원 152명에 대한 1심, 벌금 30만원~50만원(일부 선고유예,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당법 위반 등은 면소.[춘천지법 형사4부 김용호 부장판사]
 - 2012. 2.21. 충북지역 교사 및 공무원 68명에 대한 1심, 벌금 30만원 선고유예(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당법 위반 등은 면소.[청주지법 형사20부 이준명 부장판사]
 - 2012. 8.19. 광주지역 교사 및 공무원 19명에 대한 1심, 벌금 30만원 선고유예(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당법 위반 등은 면소.[광주지법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

라. 외국사례

<표 I-4-17> 주요국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여부

구 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허용	허용	허용	제한적 허용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2. 11)

마. 국내 학계 및 시민단체 의견

<표 I-4-18> 학계 및 시민단체 의견 수렴

구 분	의 견
참여연 대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후원금을 통해 정치적 지지를 표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공무원과 교원도 후원회 가입을 통해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자금 기부를 규제하는 법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가입도 허용해야 하며 나아가 여타의 민주주의 국가와 같이 예외적인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 정당 가입도 가능하도록 해야 함
한국정 치학 회 (조건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은 당원이 될 수 없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 후원회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공무원과 교원에게 일정 정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된 것으로 해석되는 현행법 하에서 후원회 가입을 허용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약할 뿐 아니라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교원 모두에게 후원회 가입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고위공무원들의 후원회 가입 역시 허용되고 있어 허용범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됨 ○ 따라서,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을 직위에 따라 세분화하여 후원회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한국정 당학 회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현행 조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후원회 활동 또한 제한되어야 할 것임
바른사 회시 민회 의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당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후원회 가입 역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

* 제18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견수렴(2011. 7. 7.)

바. 개선방안

1) 주요내용

- 공무원과 교원도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할 것임. 「정당법」 개정으로 공무원이 당원이 될 수 있다면 공무원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한 후원회에 가입해서 후원금을 내는 것은 직무나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서 보장받을 정치적 기본권임. 이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원을 포함 한 국민 누구든지 자유로운 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 가입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단서 삭제).

2) 현행 및 개정안

- 현행

- 외국인·법인·단체 등 정치자금의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교원 등은 후원회 가입 불가
- 공무원, 교원 등은 공무원법상 정치후원금 기부도 금지됨(법제처 유권해석)

<표 I-4-19> 후원회 회원 가입 금지 대상

구 분	내 용
정치자금 기부를 할 수 없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및 단체(「정치자금법」제31조제1항)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 (정당법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사람 ○ 공무원, 다만 다음의 사람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위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국회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 위원·행정보조요원 - 국·공립대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 ○ 사립학교의 교원, 다만 다음의 사람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대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익법무관, 국제협력의사,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 개정안

<정치자금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후원회의 회원) ① 누구든지 자유 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제	제8조(후원회의 회원)①----- -----<단서 삭제>

현 행	개 정 안
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 개정안 비교 : 공무원과 교원의 후원회 회원 가입 및 정치후원금 기부

<표 I-4-20> 정치자금법 개정안 비교표

구 分	현 行	제18대 국회		제19대 국회	
		강기정/김선동 의원안	백원우의원안	강기정의원안	정진후의원안
후원회 회원 가입	금지	허용	금지	허용	허용
정치후원금 기부	규정 없음 (공무원법으로 금지)	허용	개인별 연간 10만원 이하 허용	허용	허용

3. 공직선거법 개정

가. 현황

○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41조 제1항(제67조 제1항)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선거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제15조에서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제17조에서 연령산정 기준을 선거일 현재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주민투표법」제5조는 19세 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지방자치법」제15조는 19세 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은 「공직선거법」제15조를 준용하여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당법」제22조 제1항은 19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 선거권 연령의 연혁을 보면, 제헌국회 총선거(1948.5.10.)부터

- 제2차 개헌 제4대 국회의원선거(1958.5.2)까지는 「대통령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에서 21세 이상으로, 1960. 6. 15. 제3차 개헌 제5대 국회의원선거(1960.7.29.)부터 제5공화국 헌법까지는 헌법에 20세로 규정되었다가, 1987. 10. 29. 제6공화국 헌법인 현행헌법이 이를 법률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개별 선거법에서 20세 이상으로 규정되었으며, 2005. 8. 4. 「공직선거법」개정에 의해 19세로 낮춰졌음.(헌법재판소 1997.6.26. 96헌마89결정).
- 국회에서는 2017년 1월 31일 현재,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7건⁶⁴⁾ 발의되어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난 2016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선거연령 인하를 제안한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18세는 주민등록상 639,8368명임.
-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 대하여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9조제1항)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9세 미만 미성년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음(제60조 제1항)
-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어야 하는 타당성은 「헌법」제11조 제1항, 제24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1, 제4조, 제6조2, 제12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5조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3·4차 통합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5(2003년) 및 일반논평12(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2004. 2. 16.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의견 등의 근거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⁶⁵⁾

6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ProposalResult.do>>

65)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권 연령기준 의견표명] (2013. 1. 17. 결정)

나. 문제점

-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의 정치적인 강압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는 헌법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공무원의 중립의무로 바꿔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 판례(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66)에 따르면 현행 규정도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공적인 행위만을 규제하는 것이지, 공무원의 순수한 개인적인 영역까지 규제하는 것인 아니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반면 「병역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병역의 의무 및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 따른 혼인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 또한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미 다른 법률에서도 1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18세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선거권자의 연령은 영국·미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스위스·호주 등 세계 144개국에서 18세 이상으로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은 17세, 오스트리아 등 6개국은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하는 등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66)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과하여 선거의 공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한 국민주권원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에 적정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상시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행위만을 규제하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공직인 행위만을 규제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순수한 개인적인 영역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어 위 조항을 위반한다고 하여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없으므로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원 특히 대통령의 선거중립으로 인하여 얻게 될 '선거의 공정성'은 매우 크고 중요한 반면, 대통령이 감수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 제한'은 상당히 한정적이므로, 위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 선거권 부여의 기준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사람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낮추고 있는 추세임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다. 다른 법령의 연령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은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I-4-21> 다른 법령의 연령기준

구 분	근거 법령	연령 기준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	20세 이상
성년	민법	19세 이상
혼인	민법	18세 이상
8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채용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	18세 이상
제1국민역 편입, 지원 입대	병역법 제8조	18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도로교통법	18세 이상
직업소개 제한대상	직업안정법 제21조의3	18세 미만
주민등록 발급		17세
유언가능		17세
취업	근로기준법 제65조	15세 이상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제15조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 제22조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하고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권 연령기준 의견 표명] (2013. 1. 17. 결정)

라. 외국사례⁶⁷⁾

- 선거연령의 각국 입법례를 보면 2015년 6월 기준으로 232국 중 93.1% 정도(216국)가 18세 이하를 선거연령 하한으로 정하고 있고,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이 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정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선거권 연령을 하향시켜 가는 것이 추세임.
- 한편 일반적인 선거권 연령은 18세이지만 지방선거는 16세로 정한 뉴질랜드나 스위스, 일부 주(니더작센주, 슬레스비히-홀슈타인주, 브레만주 등)에서 지방선거 연령기준을 16세로 정한 독일 등과 같이 선거의 종류에 따라 연령기준을 달리 정하는 나라도 있음. 브라질이나 에콰도르와 같이 18세 이상은 의무투표이지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도 원하는 경우 투표를 할 수 있는 나라도 있고, 도미니카 공화국(18세 이상 의무 투표)이나 인도네시아(17세)처럼 혼인 시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투표가 가능하거나, 헤르체코비나(18세), 슬로베니아(18세)와 같이 고용된 경우면 16세부터 가능한 경우도 있음.

<표 I-4-22> OECD 34개 회원국가의 선거권 연령 현황

나라명	선거권 연령	비 고
오스트리아	16세 (1개국)	
그리스, 뉴질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록셈부르크, 미국, 멕시코,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터키, 핀란드,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호주, 헝가리	18세 (32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뉴질랜드, 스위스 일부 주는 선거권 연령 16세 ■ 슬로베니아는 고용된 경우는 선거권 연령 16세 ■ 일본의 선거권 연령하향 (20세→18세) : 2015. 6. 개정
대한민국	19세 (1개국)	

67)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권 연령기준 의견표명] (2013. 1. 17. 결정) 재구성

<표 I-4-23> 세계 각국의 선거연령 현황(2015년 기준)

선 거 연 령	나라명	나라 수 (%)
16 세	오스트리아(2007년 도입), 쿠바, 니카라과, 건지(2007년 도입, Guernsey, 영국왕실령), 맨 섬(2006년 도입, Isle of Man, 영국 왕실령), 저지(2007년 도입, Jersey, 영국왕실령)	6개국 (2.6%)
17 세	인도네시아(혼인시엔 나이 무관), 북한, 수단, 동티모르	4개국 (1.7%)
18 세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아, 아메리칸 사모아(American Samoa, 미국령), 안도라, 앙골라, 앙귈라(영국자치령), 앤티가 바부다(Antigua and Barbuda), 아르헨티나(18~70세는 의무투표, 2012년에 16세로 하향하여 2013년부터 적용), 아루바(네덜란드령), 호주(의무투표), 아제르바이잔, 바나마, 방글라데시, 바바도스, 벨라루스, 벨기에(의무투표), 벨리즈(Belize), 베닌, 베뮤다(Bermuda, 영국자치령)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고용된 경우라면 16세부터 가능), 보츠나와, 브라질(18세~70세는 의무투표, 본인이 원하는 경우 16~17세 또는 70세 이상도 가능),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브루나이,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버마, 부룬디, 캄보디아, 캐나다, 카부 베르디(Cape Verde), 케이맨 제도(Cayman Islands, 영국 자치령),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공화국(Chad), 칠레, 중국, 크리스마스 제도(Christmas Island, 호주 해외영토), 코코스제도(Cocos (Keeling) Islands, 호주 해외영토), 콜롬비아, 코모로연방(Comoros),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 쿡 제도(Cook Islands, 뉴질랜드제휴국가),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Côte d'Ivoire), 크로아티아, 쿠라사오(Curacao, 네덜란드령),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연방, 도미니카 공화국(의무투표, 혼인시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 에콰도르(18~65세 의무투표, 16세나 여타 선거권이 있는 자는 선택적), 이집트(의무투표), 엘살바도르, 적도 기니(Equatorial Guinea), 에리트레아(Eritrea), 에스토니아, 포클랜드 제도(Falkland Islands(Islas Malvinas), 영국자치령), 페로 제도(Faroe Islands), 핀란드, 프랑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French Polynesia, 프랑스 해외영토-해외공동체), 가봉, 감비아 공화국, 그루지야, 독일, 가나, 지브롤터(Gibraltar, 영국자치령), 그리스(의무투표), 그린란드, 그레나다, 괌(미국령), 과테말라, 기니아, 기니비사우 공화국, 가이아나, 공동 공화국, 홍콩(중국 특별행정구),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206개국 (88.8%)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키리바시 공화국, 코소보, 키르키스탄, 라오스, 라트비아, 레소토왕국(Lesotho), 리베리아, 리히텐슈타인공국(Liechtenstein),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의무투표), 마카오(중국 특별행정구),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말리, 몰타공화국, 마샬제도공화국(Marshall Islands), 모리타니공화국(Mauritania), 모리셔스공화국(Mauritius), 멕시코, 미크로네시아연방(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미국 제휴국가), 몰도바, 모나코, 몽골리아, 몬테네그로공화국(Montenegro), 몬트세詈(Montserrat, 영국자치령),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네델란드,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니제르공화국, 나이지리아, 니우에(Niue, 뉴질랜드 제휴 국가), 노포크(Norfolk Island, 호주자치령) 북마리아나 제도(Northern Mariana Islands, 미국 자치령), 노르웨이, 파키스탄, 팔라우(미국 제휴국가), 파나마(의무투표),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75세 이하는 의무투표), 페루(70세 이하는 의무투표), 필리핀, 핏케언제도(Pitcairn Islands, 영국자치령), 폴란드, 포르투갈, 푸에르토리코(미국자치령),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생바르텔레미(Saint Barthlemy, 프랑스 해외영토-해외공동체), 세인트헬레나 어센션 트리스tan다쿠나(Saint Helena Ascension and Tristan da Cunha, 영국자치령), 세인트키츠 네비스(Saint Kitts and Nevis), 세인트루시아(Saint Lucia), 세인트마틴(Saint Martin, 프랑스 해외영토-해외공동체), 생피에르앤드미틀롱(Saint Pierre and Miquelon, 프랑스 해외영토-해외공동체),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산마리노공화국(San Marino), 상투메프린시페(Sao Tome and Principe),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공화국(Seychelles), 시에라레온, 신트마르틴(Sint Maarten, 네덜란드령),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고용된 경우엔 16세부터 가능), 소말리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리랑카, 수리남, 스와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의무투표), 토크, 트리니다드토바고(Trinidad and Tobago), 튜니지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공화국(Turkmenistan),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Turks and Caicos Islands, 영국자치령), 투발루, 우간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의무투표),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Vanuatu), 바레인(2011년에 18세로 하향, 2014년부터 적용), 베네주엘라, 베트남, 버진제도(Virgin Islands, 미국령), 월리스푸투나(Wallis and Futuna, 프랑스 해외영토-해외공동체),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일본	19	한국	1개국
--	----	----	-----

세		(0.4%)
20 세	아르메니아, 카메룬, 나우루(Nauru, 의무투표), 대만	4개국 (1.7%)
21 세	피지, 쿠웨이트, 레바논(모든 남성은 의무투표, 여성은 초등교육 이수 이상자만 가능), 말레이시아, 오만, 사모아, 사우디아라비 아(남성만 가능), 싱가포르(의무투표), 솔로몬제도, 토템라우 (Tokelau, 뉴질랜드령), 통가왕국	11개 국 (4.8%)
합 계		232개

자료: CIA, the World Factbook 등의 자료 재구성

마. 판례

-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그 주된 내용은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3. 25. 2001헌마710 결정).
- 헌법 제24조에서는 선거권 연령의 구분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고, 따라서 보통선거에서 선거권 령을 몇 세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자가 그 나라의 역사, 전통과 문화, 국민의 의식수준, 교육적 요소,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자율성, 정치적 사회적 영향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된다. 다만, 그러한 입법권의 행사는, 선거권 연령의 규정에 따라 그 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들의 선거권이 제한되는 이상, 국민의 정치적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에 의해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6. 26. 96헌마89 결정).
- 선거권 연령 확정의 기준이 되는 독자적 정치적 판단능력을 몇 세부터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입법자가 국민의 의식수준과 교육수준,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의 정도,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세계 각국의 추세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6. 26. 96헌마89 결정).
- 18세 이상 19세 미만인 국민은 지방의회의원 등의 선거권을 행사할 만한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그 행사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18세 이상 19세에 이르지 못한 국민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2014. 4. 24. 2012헌마287)

바. 개선방안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의 정치적인 강압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공무원의 중립의무로 바꿔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삭제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 등의 행위금지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하는 행위에 한하도록 하려는 것임(제9조제1항 삭제).
- 정치·사회적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교류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미래 세대에 보다 가깝고 다양한 의견, 특히 교육정책 등을 의정에 반영할 경우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또, 현행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반면 「병역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병역의 의무 및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 따른 혼인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 또한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미 다른 법률에서도 1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인정하고 있음.
- 세계 각국도 20~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세계 147개국도 이미 선거연령을 18세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려는 것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가 중 우리나라만 선거권 연령하한이 19세이며, 다른 국가는 모두 18세 이하로 선거권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안 제15조).
-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음. 지역구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출마하는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하여 일정 기간 해당 선거구에 거주를 요건으로 하여 지역 대표성을 강화함(안 제16조 제2항).
-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안 제57조의6)

- 미성년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조정함(안 제60조)

2) 개정안

<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u>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u> 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선거권) ① <u>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u> .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u>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정된다.</u> 1. · 2. (생 략) ② <u>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u> . 1.~3. (생 략)	제15조(선거권) ① <u>18세</u> -----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u>18세</u> ----- ----- ----- ----- 1.~3. (현행과 같음)
제16조(피선거권) ① (생 략) ② <u>25歲 이상의 國民은 國會議員의 被選舉權이 있다</u> .	제16조(피선거권) ① (현행과 같음) ② <u>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다</u> . 다만,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u>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출마하는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u>

③ ~ ④ (생 략)

은 지역구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선거구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1.25]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생 략)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

1. (현행과 같음)
- <삭 제>
- (현행과 같음)
-

-지방공무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교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정보조요원, 국회 삼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표 I-4-24> 공직선거법 개정안 비교

구 分	현 行	제18대 국회		제19대 국회		제20대 국회		제안 안
		통희덕 의원안 소개청원	최영희 의원안	강기정 의원안	정진후 의원안	윤소하 의원안	이용호 진선미 소명호 김관영 윤후덕	
선거연령	19세이하	18세이하	18세이하		18세이하	18세이하	18세이하	18세이하
국회의원 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계속 60일 이상 관할 선거구 역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주민	
공무원의 중립의무	명시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정치 행위금지			직위를 이용 한 부당한 정 치 행위금지	
선거운동 금지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삭제		18세이하	미성년자 삭제	

사. 타 법률의 개정

-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연령을 당초 19세에서 18세 조정 개정할 경우 「주민투표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 할 필요가 있음.

<표 I-4-25> 타 법령 개정안

법률 명	현행	개정(안)
주민 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4.1>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8세

4. 국가공무원법

가. 현황

-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에 대한 헌법규범은 헌법 제7조임. “①공무원은

-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헌법 제7조의 규정은 공무원에 대한 입헌 민주주의적 신분 보장을 신분상 특권으로 바꿔치기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정치적 무능력으로 바꿔치기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집권세력에 대한 봉건적 충성관계를 강요하고 있음.⁶⁸⁾
 - 헌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이므로, 공무원도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정치운동 금지의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포괄적으로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근거하여 광범위하게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 법률해석상 이러한 포괄적인 의무는 기본권 보호영역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헌법 합치적 해석은 판례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움.
 - 영국, 미국, 일본의 경우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 가입은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정치활동도 가능하게 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가입에 대해 허용하는 나라가 많음.
 -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조항을 축소하고 그 의무내용을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 정당법 개정에 맞추어 우리나라로 공무원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68) 오동석. 2011.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안 검토.”『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 및 정당후원 허용 등 정치적 권리실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P. 6.

- 성실의무를 삭제하고, 복종의 의무는 직무 수행에 대한 소속 상관의 정당하고 구체적인 직무명령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하여는 거부할 권리를 신설함(안 제56조 및 제57조).
-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2조(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삭제함(안 제58조, 제62조, 제63조, 제66조 삭제).
- 친절·공정의 의무는 공정의 의무로 개정함(안 제59조).
-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에 한하여 제한함(안 제65조).
-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
- 공무원 복무에 대한 위임규정은 지나치게 포괄적 이므로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임하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67조).

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삭 제> 제57조(복종의 의무) ----- -----정당하고 구체적인 직무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삭 제>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2조(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제59조(공정의 의무)

<삭 제>

<삭 제>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삭 제>

①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② 제2항 -----, 이에 -----.

<삭 제>

<삭 제>

② (생 략) <삭 제>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7조(위임 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67조(위임규정) 이 법에 규정한 것 이외에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라.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 감사원법 개정안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정치운동의 금지)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0조(정치운동의 금지) -----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운동에 -----.

○ 검찰청법 개정안

< 검찰청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좌 동 2.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운동에 -----.

3.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3. 좌 동
4.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4. 좌 동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 첫째,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 둘째, 품위유지를 위한 복장 단정을 규정하고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의 착용”을 금지함으로써 노조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단결권 행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의사·표현의 자유까지 봉쇄하고 있는 제8조의 2 역시 전술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삭제되어야 한다.
- 셋째,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개정방향과 맞추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역시 삭제되거나 규제되는 정치행위를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7.4.]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현행과 동일) ② <삭 제>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 ① <삭 제>

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3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삭 제>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실는 행위
4.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완장·복식 등을 제

<삭 제>

작·배부·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개정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33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 금지되지 않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공무원들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으로 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개정방향과 맞추어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233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p>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를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p><삭 제></p>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에 해당된다.<신설 2009.11.20>

1. 최근 5년간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지지·반대한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2.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3. 정당을 설립할 것을 표방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와 정책·선거 연대를 하는 등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아니한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단체의 조직 및 활동에 관여하거나 그 단체

의 운영·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단체에 이미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단체에 해당하게 된 때에 지체 없이 그 단체에서 탈퇴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지방공무원법

가. 주요내용

- 성실 의무를 삭제하고, 복종의 의무는 직무 수행에 대한 소속 상관의 정당하고 구체적인 직무명령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하여는 거부할 권리를 신설함(안 제48조 및 제49조).
-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제54조(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제55조(품위유지 의무),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삭제함(안 제50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 삭제).
- 친절·공정의 의무는 공정의 의무로 개정함(안 제51조).
-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에 한하여 제한함(안 제57조).
-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58조)
- 공무원 복무에 대한 위임규정은 지나치게 포괄적 이므로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임하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59조).

나. 개정안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삭 제>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0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4조(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중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畫)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제49조(복종의 의무) ----- 정당하고 구체적인 직무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삭 제>

제51조(공정의 의무) -----

<삭 제>

<삭 제>

제57조(정치 운동의 금지) <삭 제>

① -----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

1. ~ 5. (현행과 동일)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조합업무를 전임(專任)으로 하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불일 수 있다

제59조(위임 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제2항 -----

-----, 이에 -----
-----.
-----.

<삭 제>

<삭 제>

<삭 제>

제59조(위임규정) 이 법에 규정한 것 이외에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 -----.

다. 검토의견

○ 「헌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이므로, 공무원도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정치운동 금지의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포괄적으로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근거하여 광범위하게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 법률해석상 이러한 포괄적인 의무는 기본권 보호영역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헌법 합치적 해석은 판례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움.

○ 영국, 미국, 일본의 경우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 가입은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정치활동도 가능하게 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가입에 대해 허용하는 나라가 많음.

○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조항을 축소하고 그 의무내용을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 정당법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로 공무원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 보장을 필요성이 있음.

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 첫째,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 2제2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 둘째, 품위유지를 위한 복장 단정을 규정하고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의 착용”을 금지함으로써 노조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단결권 행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의사·표현의 자유까지 봉쇄하고 있는 제1조의

- 3제2항 역시 전술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삭제되어야 한다.
- 셋째,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개정방향과 맞추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역시 삭제되거나 규제되는 정치행위를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①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p> <p>② 공무원(제8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연명(聯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p> <p>[전문개정 2010.7.15]</p> <p>제1조의3(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p> <p>② <u>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u></p> <p>[전문개정 2010.7.15]</p> <p>제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p> <p>1. 정당을 조직하거나, 정당의 조직을 확장하거나, 그 밖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p>	<p>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현행과 동일)</p> <p>② <삭 제></p> <p>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 ① (현행과 동일)</p> <p>② <삭 제></p> <p><삭 제></p>
	<p>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p> <p>가. 현황</p>

-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 [전문개정 2010.7.15]

-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면서 공무원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에 대한 제약장치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법에서 또 다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나. 주요내용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함(안 제3조).
-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가능하게 하고 그 직위를 이용한 정치활동을 제외한 정치활동을 허용함에 따라 공무원노조법에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여타 노동조합과 동일하게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법 제4조 삭제)

다. 법률개정안

1)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안 제3조)

<개정안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노동조합활동의보장)----- ----- ----- ----- ----- ----- <삭제>

- 개정 취지

- 현행법 제3조제1항은 공무원노조법상의 활동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노동운동금지 법리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임. 제2항을 삭제 하더라도 공무원노조법상 활동이 다른 법령이 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로는 어떻게도 해석될 수 없음.

- 판례

- 판례는 '정당하지 않은 활동'에 적용된다는 것을 논리적 전제로 하기는 하지만 공무원의 노조활동에 대해서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사실상 무제한에 가깝게 적용하고 있음(대법원 2008.10.9. 선고 2006두13626 판결)

2) 정치활동의 금지(안 제4조)

<개정안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 개정 취지

- 이 조항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와 조합원인 공무원의 정치 활동 금지 등 두 가지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음.
-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가능하게 하고 그 직위를 이용한 정치활동을 제외한 정치활동을 허용함에 따라 공무원노조법에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여타 노동조합과 동일하게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법 제4조 삭제)

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가. 현황

-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여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 또,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약장치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법에서는 또 다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나. 주요내용

-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가능하게 하고 그 직위를 이용한 정치활동을 제외한 정치활동을 허용함에 따라 교원노조법에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여타 노동조합과 동일하게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법 제3조 삭제)

다. 법률개정안

< 개정안 신·구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u>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u>	<삭 제>

VII. 법률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발의연월일 : 2017. . .
발의자 : 의원(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서 공무원이나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법 제정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모순이 있음.

또,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 및 발기인의 자격을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가진 자로 규정하여,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헌법」 제7조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직무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지만 공무원도 그 신분과는 별도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어야 할 것임.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 미국, 일본은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가입은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은 공무원이 정당가입뿐 아니라 그 밖의 정치활동도 가능하게 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가입에 대해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고, 정당가입 연령은 대부분 당현이나 당규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공교육의 혜택과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등을 통해 지식과 의식 수준이 높아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소양을 가진 연령도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임. 따라서 정당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국민의 범위를 가능한 확대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우리나라도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가입과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안 제22조 단서 및 제53조 삭제).

또,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체인 정당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연령은 각 정당의 당헌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법률 제 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를 “대한민국 국민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의 당원으로 정하는 연령 해당자”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대한민국 국민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정당의 당헌으로 정하는 연령 해당자-----
-----. <단서 삭제>

<삭 제>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정보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정보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삭 제>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삭 제>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7.

발의자 : 의원(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과 교원도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정당법」 개정으로 공무원이 당원이 될 수 있다면 공무원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한 후원회에 가입해서 후원금을 내는 것은 직무나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서 보장받을 정치적 기본권이므로 공무원과 교원의 후원회의 회원 가입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항).

법률 제 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 ①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8조(후원회의 회원) ①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⑤(생략)	제 8 조 (후 원 회 의 회 원) ① <단서 삭제> ②~⑤(현행과 같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7.
발의자 : 의원(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의 정치적인 강압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공무원의 중립의무로 바꿔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삭제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 등의 행위금지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행위에 한하도록 하려는 것임(제9조제1항 삭제).

또, 현행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반면 「병역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병역의 의무 및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 따른 혼인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 또한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미 다른 법률에서도 1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인정하고 있음.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선거권자의 연령은 영국·미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스위스·호주 등 세계 144개국에서 18세 이상으로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은 17세, 오스트리아 등 6개국은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하는 등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선거권 부여의 기준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사람에서 18세 이상의 사

람으로 낮춤(안 제15조).

또,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하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출마하는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게 하고, 공무원 드으이 당내 경선운동 금지 조항을 삭제함(제16조 및 제57조의6)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를 각각 “18세”로 한다.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출마하는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지역구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선거구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제57조의6을 삭제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거운동”을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생 략)	<삭제> ②(현행과 같음)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	제15조(선거권) ① 18세 ----- ----- 18세 ----- ----- ----- -----

하여 인정된다.

1. ~ 2. (생 략)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3. (생 략)

제16조(피선거권) ① (생 략)

② 25歳 이상의 國民은 國會議員의 被選舉權이 있다.

③ ~ ④ (생 략)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1.25]

1. ~ 2. (현행과 같음)

② 18세 -----

1.~ 3. (현행과 같음)

제16조(피선거권) ① (현행과 같음)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출마하는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지역구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선거구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생략)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9. (생략)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현행과 같음)
- 4.

-- 지방공무원, 국회의원과 지방의 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 학교의 교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② (생략)

5.~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발의연월일 : 2017.
발의자 : 의원(인)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이므로, 공무원도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정치운동 금지의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포괄적으로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근거하여 광범위하게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법률해석상 이러한 포괄적인 의무는 기본권 보호영역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헌법 합치적 해석은 판례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움.

영국, 미국, 일본의 경우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 가입은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정치활동도 가능하게 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가입에 대해 허용하는 나라가 많음.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조항을 축소하고 그 의무내용을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구체화 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로 공무원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실의무를 준법 의무로 한정하며, 복종의 의무는 직무 수행에 대한 소

속 상관의 정당하고 구체적인 직무명령에 한정하되, 부당한 직무명령에 대하여는 거부할 권리를 규정함(안 제56조 및 제57조).

- 나. 품위유지의 의무를 삭제함(안 제63조 삭제).
- 다.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에 한하여 제한함(안 제65조).
- 라.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
- 마. 공무원 복무에 대한 위임규정은 지나치게 포괄적 이므로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임하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67조).

법률 제 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제목 “(성실 의무)”를 “(준법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중 “준수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를 “준수하여야”로 한다.

제57조 중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를 “정당하고 구체적인 직무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로 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정 정당”을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2항”으로, “정치적 행위에”를 “이에”로 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7조 중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를 “이 법에 규정한 것 이외에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6조(준법 의무) ----- -- 준수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 ----- 정당하고 구체적인 직무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부당한 직무명령에 대하여는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삭 제>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 정 정당----- ----- 1. ~ 5.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 제2항 ----- -----, 이에 ----- -----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제67조(위임 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67조(위임규정) 이 법에 규정한 것 이 외에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
발의자 : 의원(인)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이므로, 공무원도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정치운동 금지의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포괄적으로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근거하여 광범위하게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법률해석상 이러한 포괄적인 의무는 기본권 보호영역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헌법 합치적 해석은 판례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움.

영국, 미국, 일본의 경우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 가입은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정치활동도 가능하게 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가입에 대해 허용하는 나라가 많음.

따라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의무조항을 축소하고 그 의무내용을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구체화 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로 공무원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실 의무를 준법 의무로 한정하며, 복종의 의무는 직무 수행에 대한

소속 상관의 정당하고 구체적인 직무명령에 한정하여 인정하되, 부당한 직무명령에 대하여는 거부할 권리를 규정함.(안 제48조 및 제49조).

나. 친절·공정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삭제함(안 제55조 삭제).
다.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에 한하여 제한함(안 제57조).

라.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58조).
마. 공무원 복무에 대한 위임규정은 지나치게 포괄적 이므로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임하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59조).

법률 제 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목 “(성실 의무)”를 “(준법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중 “준수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를 “준수하여야”로 한다.

제49조 중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를 “정당하고 구체적인 직무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부당한 직무명령에 대하여는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로 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정정당”을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2항”으로, “정치적 행위에”를 “이에”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을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써 직무집행을 현저히 해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9조 중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을 “이 법에 규정한 것 이외에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8조(준법 의무) --- 죠 수하여야---
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7조(복종의 의무) ----- 정당하고 구체적인 직무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부당한 직무명령에 대하여는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삭 제>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삭 제>
제57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 ----- -----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제2항 ----- ----- 이에 -----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삭 제>

제58조(집단 행위의 금지)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59조(위임규정)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발의연월일 : 2017. . .
발 의 자 : 의원 (인)

제안 이유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면서 공무원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대한 충분한 제약장치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법에서 또 다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이는 OECD 국가 중 상당수가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등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로 개인으로서의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함(안 제3조).
- 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을 통하여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것과는 별개로 공무원노조가 여타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 삭제).

법률 제 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은 보장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u>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u>②</u>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	<u>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은 보장된다.</u>

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발의연월일 : 2017.

발의자 : 의원 (인)

제안 이유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면서 교원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 정치 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대한 충분한 제약장치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법에서는 또 다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이는 OECD 국가 중 상당수가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등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로 개인으로서의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을 통하여 교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것과는 별개로 교원노조가 여타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3조 삭제).

법률 제 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삭 제>

참고자료

윤소하 의원의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발의안내용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41
----------	------

발의연월일 : 2017. 3. 2.

발의자 : 윤소하·김경진·김종훈

심상정·추혜선·노회찬

이정미·김종대·안민석

김수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1항, 제53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안번호 제5938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9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6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選舉에”를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區分)에 規定된 地方公務員.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 6. (생략)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私立學校教員

8. · 9. (생 략)

② ~ ⑤ (생 략)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8.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_____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국가공무원법」第2條(公務員의 구분)에規定된 國家公務員과 「지방공무원법」第2條(公務員의 구분)에規定된 地方公務員. 다만, 「정당법」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 9. (생략)

②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

-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5.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39
----------	------

발의연월일 : 2017. 3. 2.

발의자 : 윤소하·김경진·김종훈

심상정·추혜선·노회찬

이정미·김종대·안민석

김수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의 정당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OECD 국가들 중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한 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가입은 허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 유럽국가들은 정당가입 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영국, 미국, 일본에서 두고 있는 법적 제한규정도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정치에 대한 무관성, 불편부당성 및 공정성을 위한 제재이고 정당가입이나 당비 납부 등 개인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재는 아님.

따라서 우리나라로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53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1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8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6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	- <단서 삭제> <삭 제>

조교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

(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

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 (생 략)

제53조(위법으로 된 죄)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38
----------	------

발의연월일 : 2017. 3. 2.

발의자 : 윤소하 · 김경진 · 김종훈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이정미 · 김종대 · 안민석

김수민 의원(10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5941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9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6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7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및 집단행위를 원칙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공무원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음.

반면에 많은 유럽 국가들은 정당가입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정치활동도 제한하고 있지 있으며, 영국·미국·일본의 경우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은 제한하지만 정당가입은 허용하고 있고, 특정 정치활동 제한도 직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에 대한 불편부당성 등을 의미할 뿐이고, 정당가입이나 당비납부 등 개인의 정치적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님.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적 행위에 한하여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집단행위에 있어서는 직무집행을 현저히 해치는 집단행위만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 본문).

법률 제 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을 “직무집행을 현저히 해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u>공무원</u> 은 <u>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u> ② ~ ④ (생 략)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u>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u>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 ④ (생 략)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 -- <u>직무집행을 현저히 해치는</u>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37
----------	------

발의연월일 : 2017. 3. 2.

발의자 : 윤소하·김경진·김종훈·심상정·추혜선·노회찬·정미·김종대·안민석·김수민 의원
(10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5941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8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9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6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및 집단행위를 원칙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공무원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음.

반면에 많은 유럽 국가들은 정당가입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정치활동도 제한하고 있지 있으며, 영국·미국·일본의 경우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은 제한하지만 정당가입은 허용하고 있고, 특정 정치활동 제한도 직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에 대한 불편부당성 등을 의미할 뿐이고, 정당가입이나 당비납부 등 개인의 정치적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님.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적 행위에 한하여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집단행위에 있어서는 직무집행을 현저히 해치는 집단행위만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및 제58제1항 본문).

법률 제 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을 “직무집행을 현저히 해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u>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u> ② ~ ④ (생 략)</p> <p>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u>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 ④ (생 략)</p>	<p>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u>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u>직무집행을 현저히 해치는</u>-----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38
----------	------

발의연월일 : 2017. 3. 2.

발의자 : 윤소하 · 김경진 · 김종훈

심상정 · 추혜선 · 노회찬

이정미 · 김종대 · 안민석

김수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및 집단행위를 원칙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공무원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음.

반면에 많은 유럽 국가들은 정당가입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정치활동도 제한하고 있지 있으며, 영국·미국·일본의 경우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은 제한하지만 정당가입은 허용하고 있고, 특정 정치활동 제한도 직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에 대한 불편부당성 등을 의미할 뿐이고, 정당가입이나 당비납부 등 개인의 정치적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님.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적 행위에 한하여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집단행위에 있어서는 직무집행을 현저히 해치는 집단행위만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 본

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5941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9호), 「정치자금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6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7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을 “직무집행을 현저히 해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u>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u> ② ~ ④ (생 략)</p> <p>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u>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 ④ (생 략)</p>	<p>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u>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u>-----직무집행을 현저히 해치는-----</u>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p>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36
----------	------

법률 제 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은”을 “개인은”으로 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관련된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제1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5941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8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9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기탁금의 기탁) ①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을 포함한다)은 각급 선거관리위 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 외한다)에 기탁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22조(기탁금의 기탁) ①----- -----개인은-----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